

# 강화군 복지재단 지침(발령)

발령번호 제3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

2. 개정이유
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(국민권익위원회 예규 320호, 2024. 8.14.시행) 개정사항 반영하여 재단 지침 전부개정

3. 주요내용

-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(제5조)
-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·관리 (제8조)
-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(제10조)
-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·수익 금지 (제13조)
-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(제14조)
-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(제17조)
- 부당이득의 환수 등 (제18조)
- 징계양정 수준 (제27조)
- 과태료 (제28조)

「강화군 복지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전부개정지침을 발령한다.

2024년 10월 17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